성주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황숙희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(법률 제17893호, 2021. 1. 12. 전부개정)」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,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수정(안 제1조)

-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제102조 및 103조로 변경

나. 정책지원관 규정 신설(안 제5조)

- 정책지원관의 배치, 업무에 관한 사항 등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

○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1. 12. 17. ~ 12. 2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법」인용 법조문 정비와 정책지원관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